

Internal Control Standard

표준내부통제기준

Issuer (owner entity)*	1 001 237 CPL_CIB -KOREA Securities			
Involved Process(es)*	PR00005 - Compliance	Select an item.	Select an item.	Others
Involved Risk(s)*	L1-RIT0001 Compliance	Select an item.	Select an item.	Others
Keywords (e.g. "enterprise keywords")	Internal Control, Internal Control Framework, Chinese Wall			

Level*	Level 3			
Procedure Type*	1- Policy			
Organisational entity Scope of Application (ex Application scope field)*	11 199 789 CIB			
Geographical Scope of Application *	APAC-Korea, Republic of - KR	Select an item	Multiple selection possible	BNP Paribas Securities Korea
To Adapt Locally*	Transposition			
Classification rules*	Internal			
Author(s)	Sunny LEE			
Author role*	Compliance Officer			
Validator(s)*	Haeyoung CHOI, Statutory Auditor Simon KIM, CEO			

Reference*	CPLL3-00460-KO		
Version*	4.1		
Date of previous version	27/04/2023	☐ N/A	
Validation date*	14/03/2024		
Publication date*	14/03/2024		
Effective date*	14/03/2024		
Renewal date*	14/03/2027		
Implementation deadline*	14/03/2024		

Higher level procedures	
Related procedures	
Regulatory text(s) / legal provision (s)	Act o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Financial Services Companies(FSC)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Uniform Internal Control Standard of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KOFIA)
Control plan ref, if any	



Document Modification History

Version Number	Created by/Modified by	Comments	Modified Pages	Date
1.0	Dongheuk SHIN	Creation		2009.07.31
1.1	Dongheuk SHIN	New business of Statutory Auditor		2009.08.26
1.2	Yoontaek HAN	To reflect the KOFIA regulation		2011.06.15
2.0	Yoontaek HAN	To reflect the KOFIA regulation		2011.11.23
2.1	Yoontaek HAN	To reflect the KOFIA regulation		2012.03.30
2.2	Yoontaek HAN	To reflect the KOFIA regulation		2013.12.12
2.3	Yoontaek HAN	To reflect the KOFIA regulation		2014.03.14
2.4	Yoontaek HAN	To reflect the KOFIA regulation	39~42, 48~50	2016.01.05
2.5	Yoontaek HAN	To reflect the KOFIA regulation	39, 40, 41	2016.06.27
2.6	Yoontaek HAN	To reflect the KOFIA regulation	8~16, 19, 23~24	2016.10.13
2.7	Yoontaek HAN	To reflect the KOFIA regulation	26, 29, 30, 33~37	2017.03.15
2.8	Yoontaek HAN	To reflect the KoFIA regulation	10, 18, 25~26	2017.06.22
2.9	Myungjin KOO	To reflect the KoFIA regulation	Article 81,82,85	2018.03.15
3.0	Myungjin KOO	To reflect the KOFIA regulation	Article 20	2019.03.15
3.1	Yunna HA	Updated the procedure template	1,2	2020.10.12
3.2	Yunna HA	To reflect the KOFIA regulation	Article 56~73	2021.05.20



3.3	Yunna HA	To reflect the KOFIA regulation Updated the procedure template and table of contents	Article 29, 46	2021.12.20
4.0	Sunny LEE	To update the section on blocking of information exchange (“Information Barrier”)	Article 56~73	2023.04.27
4.1	Sunny LEE	To reflect the KOFIA regulation Updated an article on measures on unfair trading behavior	Article 106	2024.03.14

Distribution/Mailing List

Department/Function	Name
All departments	DL BNPPSO

EXECUTIVE SUMMARY

This standard is designed to prescribe the adequate standards and procedures to be observed by the employees of BNP

Paribas Securities Korea in order to perform business activities in a legally acceptable manner, to manage assets in a sound manner and to protect the Firm’s investors under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in Korea.

WHAT'S NEW?

To reflect the recent change on KOFIA regulation, article 106 has been amended. Article 106 now includes the Firm and the employees' responsibility to report unfair trading suspicion to regulators and the responsibility to maintain secrecy with regards to regulators' request for submi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1. CONTENTS

제 1 편 총 칙	9
제 1 조(제정 목적)	9
제 2 조(적용 범위)	9
제 3 조(용어의 정의)	9
제 4 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10
제 5 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10
제 2 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10
제 6 조(이사회)	10
제 7 조(대표이사)	10
제 8 조(준법감시인)	11
제 9 조(지점장)	11
제 10 조(임직원)	11
제 11 조(내부통제위원회)	11
제 12 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11
제 13 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11
제 3 편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12
제 1 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12
제 14 조(준법감시인의 임면)	12
제 15 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12
제 16 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12
제 17 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13
제 2 장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13
제 18 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13
제 19 조(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14
제 20 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14
제 21 조(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	14
제 22 조(준법감시업무의 위임)	14
제 23 조(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15
제 24 조(보고의무)	15



제 25 조(임직원 검직에 대한 평가·관리)	15
제 26 조(내부고발제도).....	16
제 27 조(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16
제 28 조(명령휴가제도).....	17
제 29 조(직무분리기준).....	17

제 4 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17

제 1 장 영업행위 시 준수사항..... 17

제 1 절 영업의 일반원칙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17
제 30 조(영업의 일반원칙).....	17
제 31 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18
제 32 조(집합투자업)	18
제 33 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18
제 34 조(신탁업).....	19
[삭제]	19

제 2 절 영업점 통제 및 파생상품 영업	19
제 35 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19
[삭제]	19
제 36 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및 변경)	20
제 37 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	20
제 38 조(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및 계좌 개설시의 준수사항 점검).....	20

제 3 절 계좌관리 및 매매주문 처리 등	21
제 39 조(투자자계좌 관리·감독).....	21
제 40 조(정의)	21
제 40 조의 2(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22
제 40 조의 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23
제 40 조의 4(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23
제 40 조의 5(차별적 제공 금지)	23
제 40 조의 6(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24
제 40 조의 7(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의무).....	24
제 40 조의 8(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24
제 40 조의 9(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25
제 40 조의 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25
제 40 조의 11(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25
제 41 조(투자자 위탁자산의 보관·관리).....	25
제 42 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26

제 4 절 의결권 대리행사 및 중개회사 선정기준	27
제 43 조(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27
[삭제]	27
제 44 조(신탁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27
[삭제]	27
제 45 조(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	27
[삭제]	27

제 5 절 투자광고 및 금융사고 예방

제 46 조(투자광고 방법 · 절차).....	27
제 47 조(법인 영업).....	27
제 48 조(집합투자증권 판매).....	28
제 49 조(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28
[삭제].....	28
제 2 장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	28
제 1 절 일반원칙	28
제 50 조(고객이익 우선).....	28
제 51 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29
제 52 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 리 등).....	29
제 2 절 비밀정보의 유지 · 관리	29
제 53 조(비밀정보의 정의).....	29
제 54 조(비밀정보의 관리).....	30
제 55 조(비밀정보 제공절차).....	31
제 3 절 정보차단벽	31
제 1 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부문	31
제 56 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31
제 57 조(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33
제 58 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34
제 59 조(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 · 운영).....	34
제 60 조(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35
제 2 관 사내 정보교류 차단방법 및 예외적 교류	35
제 61 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35
제 62 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	36
제 63 조(예외적 교류의 방법).....	37
제 64 조(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38
제 3 관 거래주의·거래제한 상품 목록 작성, 관리 및 상시 감시 등	38
제 65 조(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38
제 66 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39
제 4 관 사외 정보교류 차단	39
제 67 조(계열회사 등 제 3 자와의 정보 교류).....	39
제 68 조(복합점포 설치·운영).....	41
제 69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전송요구).....	41
제 70 조(임직원의 겸직).....	42
제 5 관 기타	42
제 71 조(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42
제 72 조(임직원 교육).....	42
제 73 조(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43
제 3 장 기타 업무행위 시 준수사항	44
제 1 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44



제 74 조(기본원칙)	44
제 75 조(계좌개설 및 신고)	44
제 76 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45
제 76 조의 2(내부통제)	46
제 2 절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47
제 77 조(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의 수립)	47
제 78 조(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운영)	48
제 79 조(임직원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48
제 80 조(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48
제 3 절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 구축·운영	48
제 81 조(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49
제 82 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49
제 83 조(보고체제 수립(STR, CTR))	49
제 84 조(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49
제 85 조(자료의 보존방법 등)	50
제 86 조(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51
제 4 절 민원 및 분쟁 처리	51
제 87 조(고충처리 정책)	51
제 88 조(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51
제 89 조(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51
제 5 절 정보제공 및 전자통신수단 사용	52
제 90 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52
제 91 조(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52
제 6 절 전산시스템	53
제 92 조(전산설비 및 매매시스템)	53
제 93 조(보안관리)	53
제 94 조(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54
제 7 절 대표주관회사 업무	54
제 95 조(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54
제 96 조(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54
제 97 조(기업실사 수행시 참여의무자)	55
제 4 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지 등	55
제 1 절 불공정거래 행위	55
제 98 조(정의)	55
제 99 조(임직원 금지사항)	56
제 2 절 정보이용 교란행위	56
제 100 조(정의)	56
제 101 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대상 정보의 관리)	56
제 3 절 시세관여 교란행위	56
제 102 조(정의)	56



제 103 조(점검시스템 구축. 운영).....	57
제 104 조(알고리즘 거래 관리).....	57
제 4 절 공통사항	57
제 105 조(예방교육의 실시).....	57
제 106 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조치).....	57
[별첨 1] 미공개중요정보 식별기준.....	59
[별첨 2]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강화된 준수의무.....	64
[별첨 3]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직원의 의무 및 제한 사항.....	66
[별첨 4] 고객 거래 관련 이해상충 관리 방안.....	69



제 1 편 총 칙

제 1 조(제정 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비엔피파리바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3. “정보차단벽”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사규 등(이하 이 기준에서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규에 따르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 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조직구성을 직제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 2 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제 6 조(이사회)

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 7 조(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
 3.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
 4.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제·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이 경우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제·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준법감시인)

- 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 ②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지점장)

[삭제]

제 10 조(임직원)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한다)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내부통제위원회)

[삭제]

제 12 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 ① 회사(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는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 13 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회사의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 3 편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제 1 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제 14 조(준법감시인의 임면)

- ① 회사(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3.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4.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5.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6 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7 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경영업무(법 제40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 위험관리 업무(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 2 장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제 18 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 19 조(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④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 20 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 ①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법령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의 교육과정에는 직무윤리, 투자자 보호, 사고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 21 조(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 22 조(준법감시업무의 위임)

- 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점별 또는 수개의 부점을 1단위로 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 23 조(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① 회사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처 운영, 위반 시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 24 조(보고의무)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 및 감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① 회사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점검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소관부서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점검내용의 시정 및 점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6 조(내부고발제도)

①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8 조(명령휴가제도)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9 조(직무분리기준)

① 회사는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단일거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한다)에 대해 복수의 인력(또는 부서)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제 4 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 1 장 영업행위 시 준수사항

제 1 절 영업의 일반원칙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 30 조(영업의 일반원칙)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관련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5.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또다른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②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법 제71조 및 법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2 조(집합투자업)

[삭제]

제 33 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① 회사(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② 회사(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법시행령 제9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99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 34 조(신탁업) [삭제]

제 2 절 영업점 통제 및 파생상품 영업

제 35 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삭제]



제 36 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및 변경)

① 회사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회사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 37 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

①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4항 제2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을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기준(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별도 마련)에 따라야 한다.

③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 적정성 및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상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 38 조(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및 계좌 개설시의 준수사항 점검)

① 회사는 영업점별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1인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사 또는 인근 영업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영업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영업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고객이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고객이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고객으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해당 직원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④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은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에게 다른 임직원을 다시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파생상품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래내용이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 지 여부
2. 파생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3.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 여부
4. 계좌의 실현·미실현 손익규모
5. 포지션의 과도한 집중여부 등

제 3 절 계좌관리 및 매매주문 처리 등

제 39 조(투자자계좌 관리·감독)

[삭제]

제 40 조(정의)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10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주문시스템”이란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이란 위탁자가 매매주문을 생성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전송하는 것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이란 전자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기기(하드웨어)를 말한다.



4. “거래소 시스템”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대외계시스템(FEP)”이란 회사와 거래소를 연결하는 서버로서 회사 시스템과 거래소 시스템간에 금융투자 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이나 거래체결 내역 및 시세정보를 송·수신하는 회사의 통신제어시스템(통신제어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신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6. “프로세스”란 회사와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7. “호가제출시간”이란 호가가 대외계시스템(FEP)에 도달한 시점부터 거래소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까지 소요 되는 시간을 말한다.

제 40 조의 2(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 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 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회사는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 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회사는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다만, 위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 40 조의 4(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① 침입차단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침입차단시스템은 침입차단기능만을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국 금융투자업 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는 침입차단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내지점등이 자사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금융투자업자(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와 국내지점등 사이
2.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지점등과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 사이

제 40 조의 5(차별적 제공 금지)

①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와 같이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내에 있는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2.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3.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



정하는 경우 이외에 회사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4. 회사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③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0 조의 6(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①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 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선택 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3.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4.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할 것.
5.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을 것

② 회사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제 40 조의 7(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의무)

회사는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하거나 전자통신방법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신규업무의 개발 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8(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과 관련한 전산, 통신 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9(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 ① 회사는 주문착오방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한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의 착오로 인해 투자자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착오매매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처리한 내역 및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11(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투자자의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제 41 조(투자자 예탁자산의 보관·관리)

- ①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투자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 및 법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투자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76조제2항의 외화증권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증서 등은 보호예수기관에 보호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과 구분하여 안전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당해 기준에는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42 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① 회사는 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 2.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고객이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 1.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 2.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회사는 제3항(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1호바목을 포함한다)에 따른 수탁거절 사유를 계좌개설 시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고객의 승인 없이 고객의 파생상품, 기타 고객 예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⑥ 회사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절 의결권 대리행사 및 중개회사 선정기준

제 43 조(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삭제]

제 44 조(신탁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삭제]

제 45 조(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

[삭제]

제 5 절 투자광고 및 금융사고 예방

제 46 조(투자광고 방법 · 절차)

① 임직원은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의 충분한 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에 대하여 관련법령등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심사절차 및 방법, 광고의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 · 운영하여야 한다.

제 47 조(법인 영업)

① 법인영업 담당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상태 등이 불량한 법인을 증거금징수 예외기관으로 등록하는 행위
2. 허수 매매주문 수탁
3. 고유계정과의 금융투자상품 연계매매를 통한 부당이득 제공 또는 손실보전행위
4. 채무증권의 저가매도 및 고가매수, 투자자문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5. 기타 관계법령등을 위반한 위법 · 부당한 거래



② 회사는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 선정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며, 동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48 조(집합투자증권 판매)

① 회사 및 임직원은 자신이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 또한 집합투자상품별로 보상이나 성과보수 지급기준 등을 차등 적용하거나, 집중적인 판매독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총괄하는 부서는 집합투자증권별로 판매보수율 또는 판매수수료율과 판매증가율 등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증가율이 높아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시정조치하고 조사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상수익율의 보장
2. 예상수익율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의 사용
3.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제 49 조(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삭제]

제 2 장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

제 1 절 일반원칙

제 50 조(고객이익 우선)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 51 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2 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절 비밀정보의 유지·관리

제 53 조(비밀정보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1.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3.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4. 기타 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제 54 조(비밀정보의 관리)

- ①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비밀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6. 회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회사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1.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2. 비밀정보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관리되어야 한다.

제 55 조(비밀정보 제공절차)

임직원은 타인(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나. 비밀정보의 제공 필요성 또는 사유

다. 비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 일시 등

3.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비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절 정보차단벽

제 1 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부문

제 56 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라 한다)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한 식별기준은 [별첨 1]과 같다.

③ 제1항 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해당 동의 또는 전송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데 대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해당 요구나 동의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6.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해당 동의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7. 회사 또는 투자자 중 어느 일방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할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제시된 잠정적인 매매 조건 또는 의향에 관한 정보

8.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59조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자 (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자”라 한다) 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제1항 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하며, 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



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⑤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자는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자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제58조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제59조 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 57 조(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설정한다.

1. 주식부 (Equity Cash)
2. 글로벌마켓-기관영업부 (Global Markets – Institutional Solutions)
3. 글로벌마켓-발행시장부 (Global Markets – Primary Markets)
4. 기관금융부 (Financial Institutions Coverage)
5. 업무부 (Operations)
6. 재무관리부 (Finance Control Department)
7. 전산부 (IT Department)
8. 리스크관리부 (Risk Management)
9. 준법감시부 (Compliance Department)
10. 감사실 (Internal Audit)
11. 경영기획 (Management)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제1항에 추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2. 금융투자업의 종류 (법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를 포함한다) 및 겸영·부수 업무
3.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4.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③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58 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 ① 회사는 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라 한다)의 부서장을 해당 부문의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한 책임자(이하 “부문별 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 ②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부문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이하 “정보별 책임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 59 조(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운영)

- ① 회사의 준법감시부서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자로 지정한다.
-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 업무의 수행 기준,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위임받은 임직원은 업무 수행 내역을 정보교류통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1조 제6항에 따른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준수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
2. 제65조에 따른 거래주의 상품 목록 관련 상시감시 업무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관련 통지·조회 업무

Document Standard

34 / 1

The bank
for a changing
world



BNP PARIBAS

Classification : Internal

3. 제71조에 따른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업무

4. 제72조에 따른 임직원 교육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임직원은 [별첨 2]에 기재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⑤ 내부통제기준 제8조 및 제15조는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자에 준용한다.

제 60 조(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를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별첨 3]에 기재된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자는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 2 관 사내 정보교류 차단방법 및 예외적 교류

제 61 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3자(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통제 담당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 62 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무 공간의 분리

가. 사무 공간을 분리하되, 현관, 통로, 회의실 등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 및 주방, 휴게실, 화장실 등 업무공간 이외의 사무공간을 공동으로 이용

나. 적절한 유리벽, 파티션 등을 설치하여 사무공간을 구분하면서 출입문 및 연결통로를 공동으로 이용
다. 정보교류통제 담당자가 지정한 후선·지원부서는 사무공간의 공동 이용 가능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산설비 내에 논리적 분리 등의 방법으로 정보차단벽을 설치

나. 파일 및 컴퓨터 등에 대한 접근 제한

3. 회의·통신 기록 유지

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한 상시적 기록 유지.

(1) 전화/화상통신 : 녹음(녹취), 녹화 또는 대화의 요지(일시, 상대방, 대화의 주요 내용)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록

(2) 문서의 전달 : 해당 문서의 사본 보관 후 발송자 및 수령자 기재

(3) 팩시밀리: 팩시밀리 사본 및 그 송/수신 정보 보관

(4)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의 전달: 해당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의 서버 저장

(5) 전자적 저장장치 접근을 통한 정보공유 : 정보접근권자의 리스트 유지

(6) 대면회의: 회의의 요지(일시, 상대방, 대화의 주요 내용)를 기록. 단, 본 가목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제공에 관한 기록이 유지되고, 대면회의에서 이러한 정보의 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의 정보만



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면회의 요지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미공개중요정보의 유출 또는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와 타 부서간 회의·통신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가. 전자매체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정보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나. 프로젝트 코드명 사용, 문서의 출력 장소 제한 및 기밀문서 파기 절차 운영

다. 기타 정보교류의 효율적 차단을 위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자가 정한 사항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3 조(예외적 교류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자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제 64 조(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① 제63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중 후선부서에 속하여 감사, 인사, 회계, 재무, 세무, 총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경영기획,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포함), 준법감시, 내부 통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중 현업부서와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별첨 3]에 기재된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관 거래주의·거래제한 상품 목록 작성·관리 및 상시 감시 등

제 65 조(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자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지정(계열회사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자는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 임직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거래주의 상품 목록의 열람범위 및 열람절차 등에 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

2.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경우 부당한 매매거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거나 매매거래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3. 거래주의 대상목록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금지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⑤ APAC Control Room은 BNP Paribas Group Compliance 부서가 제정하여 시행중인 “Global Control Room procedure on the Grey, Watch and Insider Lists Management”에 근거하여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의 목록 작성·관리 및 상시감시 업무를 할 수 있다.

제 66 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은 [별첨 4]와 같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4]에 따른다.

제 4 관 사의 정보교류 차단

제 67 조(계열회사 등 제 3 자와의 정보 교류)

① 회사는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제62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3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는 제3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



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인사 (성과평가 등 포함), 회계, 재무, 세무, 총무, 경영지원(그룹차원의 비상계획수립, 재난 대응 등 포함), 경영분석, 경영기획,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포함), 준법감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고객 리스크 익스포저 관리 등 포함)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보고, 승인, 검사, 감독, 신상품개발관련 협의, 대고객서비스제공을 위한 내부 협의 또는 자문 등 업무처리, 국내외 법령 및 이에 따른 영장, 요청, 요구, 명령의 준수, 기타 분쟁해결 절차 협력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회사가 아래 각 호의 목적으로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회사 및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등에 속하는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인수·합병에 관한 자문, 기업금융, 금융투자상품 매매·중개거래, 대출 등과 관련한 매매, 인수, 중개, 주선, 알선, 대리 또는 자문 업무, 잠재적 수요 파악 및 시장 동향 제공 업무 등 포함)

나. 회사가 금융투자업등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열회사가 해당 금융투자업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이나 투자자의 물색, 거래구조 등에 대한 자문, 시장 및 가격정보의 제공, 위험회피거래의 제공, 자금의 조달,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하여 거래 전후 필요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또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등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다. 회사가 고객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 계열회사와 이 거래에 대한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이하 “반대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또는 회사가 계열회사와 반대거래의 조건을 미리 확정하고자 하는 목적,

라. 위 가 내지 다목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후 계열회사와 그 성과 및 수익을 배분하거나, 세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

마. 기타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

7. 계열회사와 함께 국내 경영전략을 수립하거나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8. 회사 및 계열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부서별 보고체계 (Matrix Reporting Line)에 따라 경영 및 인사관리 목적으로 회사의 업무내용 또는 재무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경우, 직제상 동일 조직 또는 기능에 속한 계열회사의 부서장 또는 상위책임자인 부문별 관리자 (Functional Manager) 에게 업무 관리에 필요한 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부문별 관리자가 업무 관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Internal Standard

40 / 1

The bank
for a changing
world



BNP PARIBAS

Classification : Internal

9. 회사 및 계열회사의 국내 사업에 관한 경영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지역 총괄 대표 (Country Head) 에게 경영 및 인사관리, 사업리스크(Franchise Risk), 평판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지역 총괄 대표가 경영관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회사의 경영지원부 부서장 (Chief Administrative Officer/Chief Operating Officer)이 담당 업무의 수행 목적으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영지원부 부서장의 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1.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않은 경우로서 정보 교류통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제63조 및 제64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 68 조(복합점포 설치·운영)

①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상담·투자권유·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출입문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회사별 사무공간은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

2. 회의실, 상담실등 상담공간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영업소명 포함) 의 별도 표기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점포에서 고객이 상담·자문 목적으로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교류통제 담당자가 사전에 지정한 기간 동안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69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전송요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 70 조(임직원의 겸직)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후선·지원부서 임직원
2. 기타 회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 겸직에 관한 사전 확인을 받은 임직원

제 5 관 기타

제 71 조(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주의 및 제한목록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수령자 (또는 임시 편입 대상자)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정보 수령 일시 또는 편입 일시 및 해제 일시, 교류 정보의 주요 내용 등
2.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기록·유지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APAC Control Room)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각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와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의 명단을 제1항에 따른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고 감독당국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 72 조(임직원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이 이 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이 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할 사항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시 임직원에게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제 73 조(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회사의 영업소에 비치하여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제5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 제65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 제66조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제 3 장 기타 업무행위 시 준수사항

제 1 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 74 조(기본원칙)

-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객과 임직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5 조(계좌개설 및 신고)

- ①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장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이 지분증권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③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지분증권등의 매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계좌를 금융투자상품별로 구분·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계좌개설점

⑤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 모집, 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⑥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76 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이 개설한 계좌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 및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의 경우 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임직원은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



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6 조의 2(내부통제)

① 임직원이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1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1. 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을 한도 등의 준수여부
3.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 임직원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라 회사가 정한 월간 매매회전을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1.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⑥ 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⑦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장내파생상품 및 ELW.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채산을 지분증권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제 77 조(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의 수립)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등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 78 조(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운영)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 79 조(임직원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직급별로 차등 부여하고 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신용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하는 자에 대해 신용정보의 유출·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80 조(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 구축·운영



제 81 조(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 ①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 의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 등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특정금융정보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조직체계와 내부 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임직원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82 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 ①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및 거래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는 등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룰(rule), 스코어링(scoring)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 83 조(보고체계 수립(STR, CTR))

회사는 STR과 CTR 보고대상 거래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체계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 보고체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 84 조(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 ①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③ 회사가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④ 회사가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⑤ 회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제 85 조(자료의 보존방법 등)

① 회사는 제84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본점 등”이라 한다)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84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의한 관련 자료는 제외한다.

제 86 조(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회사는 임직원의 혐의거래 보고와 관련된 사실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은 임직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절 민원 및 분쟁 처리

제 87 조(고충처리 정책)

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88 조(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 ① 민원 및 분쟁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②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회사의 민원책임자는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장 등과 협의하여 책임있는 회신문을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회신문 전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내용을 민원담당부서장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9 조(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 ①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민원 및 분쟁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②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결과회신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가 민원 및 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준법감시부서는 민원담당 직원의 교육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램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민원 및 분쟁 처리과정 중 제도적·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하게 된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홈페이지에 민원접수방 운영 등 고객의 효율적인 민원제기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 5 절 정보제공 및 전자통신수단 사용

제 90 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①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
2.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3. 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4.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지의 여부 등

제 91 조(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임직원은 이메일, 대화방,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과 고객간의 이메일은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2. 임직원의 사외 대화방 참여는 공중포럼으로 간주되어 제9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절 전산시스템

제 92 조(전산설비 및 매매시스템)

- ① 회사의 전산설비는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② IT담당 임직원은 전산화된 매매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작업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유효성과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2. 고객 또는 매매거래 정보의 보안의 적정성
3. 전산처리시스템 용량의 적정성
4. 매매주문 전산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제 93 조(보안관리)

- ① 회사는 시스템보안, 통합단말보안, 어플리케이션보안, 네트워크보안 및 관리보안 등에 대한 보안관리규정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내용을 준법감시인 또는 해당 업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 인증한 침입차단프로그램의 설치유무 및 시스템의 운영실태
2. 전자금융거래가 국가기관이 인증한 암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암호화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프로그램의 설정과 운영실태
3. 침입탐지 시스템의 설치 유무 및 운영실태
4. 복구방안, 비상계획의 유무 및 실효성
5. 복구전담팀의 운영여부
6.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 및 사이버 영업점의 보안 안전성



②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매매거래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암호화를 위한 키의 생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비밀번호 변경, 접근 권한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통제구역 설정 및 카드리 등의 접근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IT담당 임직원의 퇴사 또는 타부서 이동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등을 반드시 변경하여 적절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 94 조(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①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전산장애 분류기준을 정하고 분류된 모든 전산장애에 대해 전산장애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장애 발생시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에게 전산장애 내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시 대체주문수단을 통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 7 절 대표주관회사 업무

제 95 조(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96 조(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내실있는 기업실사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동안 기업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공개(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3개월
2.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10조 제2호 나목에 따른 투자적격등급을 말한다)이상인 무보증사채 발행의 경우 3영업일



3. 그 외의 경우 7명업일

제 97 조(기업실사 수행시 참여의무자)

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실사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은 회사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1. 인수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기업금융업무(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외국 변호사 포함)
4. 공인회계사(외국 공인회계사 포함)
5. 금융투자분석사(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5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를 말한다)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증권분석, 산업분석 등에 관한 전문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6호 나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지 등

제 1 절 불공정거래 행위

제 98 조(정의)

“불공정거래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 99 조(임직원 금지사항)

- ① 임직원은 제98조 각 호의“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제98조 각 호의“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매매거래 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절 정보이용 교란행위

제 100 조(정의)

- ① “정보이용 교란행위”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 ② “중요정보”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 101 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대상 정보의 관리)

- ① 임직원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중요정보”와 관련한 정보차단벽 설치, 운영, 임직원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및 정보차단벽 통과 등에 대해서는 제56조 내지 제61조를 준용한다.
- ③ 회사는 “중요정보”와 관련된 “지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정보의 중요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70조의“거래제한 대상목록”또는 제71조의“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하여 임직원의 매매거래 및 회사의 고유재산 거래를 제한하거나 매매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이 “중요정보”와 관련된 사내 및 사외 회의, 통신행위를 하는 경우 제62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절 시세관여 교란행위

제 102 조(정의)

- ① “시세관여 교란행위”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 ② “알고리즘 거래”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③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란 IT,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103 조(점검시스템 구축, 운영)

회사는 제102조제1항의 “시세관여 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여야 한다.

제 104 조(알고리즘 거래 관리)

①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알고리즘 거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는 “시세관여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알고리즘 거래”프로그램을 구입 또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프로그램 사용 전에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로부터 “시세관여 교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매매주문 기법의 포함 여부 등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는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 사용자의 임의변경, 오류 및 해킹 등으로 인한 시세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프로그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투자자가 별도로 구입한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을 회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세관여 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와 관련한 증빙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절 공통사항

제 105 조(예방교육의 실시)

회사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6 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조치)

① 회사 및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이를 금융당국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사후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 및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등 조사를 위하여 관련법령등에 따라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요구 사실 및 내용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공개중요정보 식별기준

(1) 금융투자업등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로서 제(2)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미공개중요정보로 본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예시)

- ✓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은행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 파산의 신청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
- ✓ 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 또는 제3자와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 ✓ 해산사유 발생

2. 영업활동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¹

(예시)

- ✓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 체결 · 해지
- ✓ 제품의 수거 · 파기 결정
- ✓ 생산활동의 중단 폐업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²

(예시)

¹ 해당 회사에 적용되는 거래소 공시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되, 비상장회사의 경우 매출액의 10% 이상의 영향을 주는 경우 일응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음

² 해당 회사에 적용되는 거래소 공시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되,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출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응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음.



- ✓ 출자 비상장법인의 부도 · 회생절차 · 파산 · 해산
- ✓ 천재 · 지변 · 전시 · 사변 또는 화재 등 재해 발생
- ✓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결정, 중요한 자산양수·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등의 계약 체결
- ✓ 신규시설투자, 시설외 투자, 시설증설, 별도공장 신설,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

4. 범죄, 비위 또는 회계부정 행위의 발행, 거래소의 제재 또는 소송등의 발생

(예시)

- ✓ 어음 위 · 변조사실 확인, 횡령 또는 배임사고 발생³
- ✓ 회사에 대한 벌금 · 과징금 등 부과⁴
- ✓ 가장납입의 발생
- ✓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감사보고서상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한정 의견을 받은 때, 해당 보고서상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있을 때
-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을 때
- ✓ 국내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대한 상장 또는 상장폐지 결정
- ✓ 국내 또는 해외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정지, 조회공시요구 조치
- ✓ 손익구조변경 또는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 발생
- ✓ 중요한 소송 발생⁵ (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 및 경영권분쟁 등 관련 소송은 중요한 소송으로 판단)

³ 대표이사, 지배주주인 임원의 횡령, 배임인 경우 그 혐의사실만으로도 일단 중요정보로 간주. 기타 임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적용되는 거래소 공시규정을 참고하고,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일응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음.

⁴ 해당 회사에 적용되는 거래소 공시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고,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출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응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음.

⁵ 해당 회사에 적용되는 거래소 공시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고,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의 10%의 이상의 금액을 청구 또는 청구당하는 소송에 해당되는 경우 일응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음.



5.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⁶

(예시)

- ✓ 단기차입금 증가, 채무면제·인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등, 금전의 가지급 대여 등, 사채의 원리금 미지급, 대출원리금 연체 발생
-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실발생
- ✓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6.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예시)

- ✓ 자본증가 또는 감소, 주식소각, 주식 분할·병합,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부채의 증가에 관한 이사회 결의
- ✓ 주식관련사채, 일반사채 및 신종사채의 발행 결정
- ✓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체결) 또는 처분(신탁계약 해지)의 결의
- ✓ 주식배당, 현금·현물배당 결정
- ✓ 액면·무액면주식 전환
- ✓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 ✓ 타법인주식 또는 출자증권 취득·처분/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처분⁷

7. 경영권 변동에 관한 중요사실

(예시)

- ✓ 합병, 주식교환·이전, 분할, 분할합병 등의 결정
-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등

⁶ 해당 회사에 적용되는 거래소 공시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고,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의 10%의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변동에 해당되는 경우 일응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단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의 경우 자본의 5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차손에 해당되는 경우 일응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음.

⁷ 해당 회사에 적용되는 거래소 공시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고,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의 10%의 금액에 해당하는 출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응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8. 기타

- ✓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 ✓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9.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공시 등 법규에 따른 공시사유

10. 기타 해당 법인의 영업, 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2)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는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그 자회사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공개된 때부터 3시간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4.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5.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3) 필요한 경우 추가로 미공개중요정보 식별기준을 채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강화된 준수 의무

(1) 정보이용 및 이해상충 방지 관련 준수사항

1. 비밀유지의무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 내규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2. 직무상 정보이용 금지(법 제54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정보교류 차단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3. 선행매매 금지(법 제71조 제1호)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법 제174조 제1항)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 법 제 174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을 포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5.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법 제178조의2제1항)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서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6. 기타 정보 이용 및 이해상충 금지 관련 법령 및 내규 준수

7.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대한 정기교육 이수

(2)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수의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일반 부서보다 강화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수의무를 적용함

1.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목록 관련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목록의 거래를 금지
2. 이해상충의 우려가 존재하여 지정한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상시적인 거래 금지 조치를 하거나 사전 승인 절차에 따라 거래하도록 함
3. 그 외 이해상충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지정한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4. 거래 종목, 금액, 거래 횟수, 최소 의무보유기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준수의무를 적용할 수 있음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직원의 의무 및 제한 사항

(1)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직원의 준수 사항

1. 비밀유지의무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 내규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2. 직무상 정보이용 금지(법 제54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정보교류 차단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3. 선행매매 금지(법 제71조 제1호)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법 제174조 제1항)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 법 제 174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을 포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5.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법 제178조의2제1항)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서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타 정보 이용 및 이해상충 금지 관련 법령 및 내규 준수

7.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직원에 대한 정기교육 이수

(2)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수의무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제한사항을 적용함

1.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목록 관련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목록의 거래를 금지
2. 이해상충의 우려가 존재하여 지정한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상시적인 거래 금지 조치를 하거나 사전 승인 절차에 따라 거래하도록 함
3. 그 외 이해상충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지정한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4. 거래 종목, 금액, 거래 횟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3) 기타 준수 사항

1. 비밀정보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이를 알고 있는 경우로 간주하여 거래금지 및 이해상충 방지의무 등 적용



2. 미공개중요정보 등 비밀정보의 접근 및 이용 행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직원에게 대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



고객 거래 관련 이해상충 관리 방안

(1) 이해상충 관리의 기본 원칙: ‘이해상충’이란 영업활동 중에 회사의 이익, 고객의 이익, 임직원의 이익이 직접/간접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아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내부통제: 해당 거래의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파악, 평가
- 공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
- 거래 금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 금지

(2)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

1. 회사가 고객과 경쟁적/이해상충적 거래를 제안 또는 주관하는 경우

(예시)

- ✓증권 인수를 하는 동안 회사가 다른 고객에게 회사가 인수하는 증권을 취득할 것을 추천하는 경우
- ✓회사가 다른 계열사가 발행한 또는 소유한 증권을 고객에게 판매·추천하는 경우
- ✓회사의 자문 부서에서 고객에게 펀딩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회사의 대출 담당부서에서 동자문에 근거하여 같은 고객에게 신디케이트론을 추진하는 경우

2. 회사가 고객의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시)

- ✓금융·M&A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복수의 고객에게 동시에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 ✓한 고객에게 증권 발행 자문을 제공하고, 다른 고객에게 해당 증권 거래 참여를 추천하는 경우

3. 회사가 고객의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관계에 관련된 업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고객에게 금융·M&A 관련 자문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4. 고객의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회사의 영업 활동의 경우

(예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비공개정보를 영업 지원의 목적으로 타 부서에 제공하는 행위
✓고객 주문을 받은 증권과 관련하여 고유재산 매매, 인수 참여 등을 하는 경우

5.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일반 거래와 같은 수준의 계약조건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래를 선택하는 경우

(예시)

✓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에 주문을 하거나 주문을 받는 경우
✓회사가 인수·중개·공모·사모를 하는 금융상품을 계열 운용사/일임사가 운용하는 고객 자산·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경우

6. 회사가 고객의 비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

(예시)

✓회사의 계열사가 대출을 한 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회사가 인수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계열사는 증권발행대금을 받아 대출을 회수함으로써, 발행인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우

7.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 따라 정상적인 수수료 외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예시)

✓회사 등의 직원이 고객과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선물 및 접대 등을 받는 경우(아웃소싱 업체로부터 선물/접대를 받고 더 저렴한 비용의 아웃소싱 업체를 거절하는 행위 등)

8. 기타 고객과 회사간 잠재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

Control Standard

70/71

The bank
for a changing
world



BNP PARIBAS

Classification : Internal

(3) 대응 방안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거래 중단”, “고객에게 공개 또는 동의 취득”, “업무 분리” 중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방안을 선택하여 실행하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문의하여 처리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이해상충 관리방안을 채택하여 운영할 수 있음

